

“FTA 상대국 및 일반특혜협정 상대국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중단에 따른 FTA 지원대책 안내 ”

1. 개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FTA 상대국의 원산지증명서(C/O) 및 일반특혜협정 상대국의 원산지증명서(C/O) 발급기관이 폐쇄되는 경우 우리나라 수입기업이 FTA협정관세 또는 일반특혜관세 적용을 신청할 수 없어 세액 부담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관세청에서 현지 발급기관 폐쇄에 따른 수입기업의 어려움과 피해의 감소 및 예방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기업 지원방안을 공고하여 안내 드립니다.

2. FTA 상대국의 C/O 발급중단에 따른 FTA 지원대책

1) 지원 대상

구분	지원 대상
지원대상협정	한-인도 CEPA
지원적용기간	2020.3.25 ~ 2020.5.3. (인도 C/O 발급기관 폐쇄 기간)
지원대상기업	지원대상 협정의 C/O 발급기관 폐쇄기간 중 협정세율 적용신청을 희망하나, C/O를 확보하지 못한 기업

※향후 다른 FTA 상대국의 C/O발급기관 폐쇄 시 추가 통보

2) 지원 내용

① 해당 기간 중 수입신고 시 한-인도 CEPA 협정세율 적용 희망기업인 경우

수입신고 시 특별세정지원을 신청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그 이후 C/O를 발급받아 협정 사후적용 신청¹⁾ (단, 지원대상 기간 전 한-인도 CEPA 협정세율 적용 신청이력이 있고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코로나19 피해기업**으로 신청한 경우에 한함)

*납부기한의 연장(최대 1년)은 사후적용 신청과 별개로 신청하며, 납부기한 연장기간이 끝났으나 C/O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관세납부 후 C/O 구비 시 기납부세액을 환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됨.

**코로나19 피해기업 증명 방법 : 코로나 19에 따른 매출액 변화를 나타내는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서류 구비하여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제출

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FTA특례법), 제9조제1항

② 해당 기간 중 한-인도 CEPA 협정세율 사후적용신청 기한 만료 기업인 경우

지원 대상 기간 중에 「FTA특례법」 제9조제1항 규정에 따른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이 종료되는 경우, 사후적용 신청기한 종료일로부터 1년까지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 연장

* (예시) 2019.3.26. 수입신고 수리된 물품을 '20.3.25.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하고자 하였으나, 인도 C/O 발급 기관 폐쇄(20.3.25~)로 C/O를 발급받지 못해 협정관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을 2021.03.25.까지 연장.

3. 일반특혜협정 상대국 원산지증명서 발급중단에 따른 일반특혜관세 활용 지원

1) 지원 대상

구분	지원 대상
지원대상협정(규정)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최빈개발도상국 특혜관세 공여규정
지원대상물품	방글라데시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지원대상기업	방글라데시의 C/O 발급기관 폐쇄로 수입신고 시 지원대상 협정(규정)의 일반특혜관세의 적용신청을 하지 못하는 기업

※ 향후 다른 상대국의 C/O 발급기관 폐쇄 시 지원대상 협정(규정)으로 추가

2) 지원 내용

해당 기간 중 수입신고 시 일반특혜 협정세율 적용 희망기업인 경우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 40조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수리 전 반출시 현행 C/O 제출기한인 '수리 전 반출 후 15일 이내'에서 '상대국 C/O 발급 재개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연장

※ 방글라데시의 C/O 발급재개 시 별도 통보 예정

3) 시행일

2020.4.22 이후 수입신고수리 전 반출 신청 건부터 적용

| Contact



소은혜 관세사

02-6011-3012
yhso@esein.co.kr



백지영 관세사

02-6011-3025
jybaek@esein.co.kr



| 세인 홈페이지 | Newsletter 더보기 | 구독신청 |

세관관세법인의 뉴스레터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세관관세법인의 홈페이지 또는 위의 컨설턴트에게 연락하시어 확인 바랍니다.

The newsletter of SEIN Customs & Auditing Corp. is published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general information and does not include any official views or legal opinions. For more details, please check our website or contact the consultants mentioned above.

Copyright 2020 SEIN Customs & Auditing corp. All rights reserved.